

【 2017.11.3(금) 건설경제 】

# 工期연장 간접비처럼 회피… “건설사에 비용 전가 불보듯”

정부가 건설공사비에 적정 수준의 환경 관리비를 반영하기 위해 환경관리비 산출 기준을 마련 중인 가운데 환경관리비 산출기준이 밭주기관 감질의 또 다른 불씨가 될 것이라는 지적에 제기되고 있다.

환경관리비 산출기준에 따라 표준시장 단가, 표준품셈 또는 견적 등을 기반으로 환경관리비를 산출할 경우 밭주기관이 최소한의 수준을 반영하고자 건설사에 부족한 환경관리비를 떠넘길 게 볼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2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현재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을 추진 중이다.

지금은 먼지·오수 등 건설현장의 오염원에 의한 주민의 환경피해 방지를 위해 낮

게는 직접공사비의 0.3%에서 높개는 1.8%를 환경관리비로 계상하고 있다.

지난 2001년 환경관리비를 신설할 때는

직접비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간접비로 반영하도록 했다.

그러다가 2012년에 설계시 산출 가능한 항목의 단가·수량을 반영하는 직접비와 사전 산출이 어려운 비용을 공사비 대비 요율로 일괄 반영하는 간접비 방식을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직접공사비에 최저 요율 이상을 적용해 계상하되, 표준품셈 등 원가 계산에 따라 산출한 환경관리비를 포함하도록 하다 보니 불명확한 적용기준으로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건설공사비에 계상

적정공사비도 반영 안되는 여건 속

“설비를 시행보다 공론화 과정 필요”

‘부실 집행’ 밭주처 처벌기준 요구도

하는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을 새로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환경관리비 산출기준을 만들

어 적용하면 현장의 혼선이 줄어들고 중

복 계상 등의 부작용도 사라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제정은 가뜩이나 적정공사비를 보장해 주지 않는 밭주기관이 환경관리비마저 제

대로 지급하지 않는 범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지난 2012년 환경관리비에 직·간접

비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도 밭

주기관이 환경관리비를 건설사에 전가하

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환경관리비 산출에 표준시장단가, 표준

품셈, 견적 등을 활용할 경우 밭주기관은

최소한의 환경오염방지시설만 설치하도

록 하고선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나몰

라리할 가능성이 크다.

건설사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계변

경을 요구하더라도 공기연장 간접비처럼 환

경관리비의 추가지급을 회피할 게 뻔하다.

이에 따라 환경관리비 산출기준을 당장

제정하기보다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적정 수준의 환경관리비 산출을 위한 표

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보완하고 밭주

기관이 설계변경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환경관리비가 부실하게 산

출·집행될 경우 건설사는 물론 밭주기관

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을 제정한다고 하는데, 설불리 시행했다

는 더 큰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며 “시

간적인 여유를 갖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

쳐 적정한 환경관리비를 산출·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 건협 ‘건설산업 CEO 미래전략포럼’ 제주서 개최

# “韓경제 환자같은 꼴… 新성장공식 못찾으면 추락”

이용섭 일자리 총괄부위원장  
‘J노믹스 오해와 진실’ 강연  
유주현 건협회장 “지속 가능  
가치 만드는 산업 거듭날 것”

“겉으로는 풍채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병(病)주머니를 차고 있는 환자와 같습니다.”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2017 건설산업 CEO 미래전략포럼’에서 ‘J노믹스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강연을 통해 한국경제를 이같이 진단했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2일 메종글래드 제주호텔에서 ‘건설이 여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제로 건설산업 CEO 미래전략포럼을 개최했다.

연사로 나선 이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제1 국정과제인 일자리 정책을 종합하며 대통령비서실정책특보를 겸하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한국경제는 뛰어지는 물 속의 개구리 신세로 신성장공식을 찾지 못하면 추락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경제시스템이 바로 ‘J노믹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J노믹스는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경제, 혁



2일 오후 제주도 제주메종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17 건설산업CEO 미래전략포럼’에서 이용섭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J노믹스의 오해와 진실’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최적한 주거환경 건설로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는 도전정신으로 오늘날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 건설산업이 지속가능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럼 둘째날인 3일에는 조정호 인문경영연구소 소장이 ‘인문학적 통찰력을 통한 리더의 자세’란 주제로 강연을 한다.

올해로 15회를 맞은 건설산업 CEO 미래전략포럼엔 건설업계 최고경영자(CEO)와 건설단체장, 국회와 국토부를 비롯한 정부부처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제주=김태형기자 kth@

신성장, 공정경제라는 4륜구동시

스템”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선 고용률을 66.1%(2016년 기준)에서 70%대로, 임시직 근로자 비중을 21.7%에서 11.2%로, 연간 평균 근로시간을 2052시간에서 OECD 평균 수준인 1800시간대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일자리 주도성장과 노동정책’을 주제로 강연했다.

홍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최근 노동정책 변화로 기업인들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기업인들에게 일방적 부담을 주진 않겠다. 노동조합도 변해야 한다. 저성장과 양극화를 해결하려면 모든 경제주체가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야 한

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산업’에 대해 강연한 유병규 산업연구원 원장은 4차 산업혁명이 양면성을 지니고 있어 국가 차원의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유 원장은 “일본의 건설장비업체인 코마츠는 스마트건축서비스를 융합해 ICT 굴착기, 무인시공 및 굴착 등의 성과를 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엔 융합을 통한 기존 업의 파괴와 신사업 창출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김일평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이 국토교통 주요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앞서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70년간 건설 산업은 안전하고 편리한 인프라와

【 2017.11.3(금) 건설경제 】

# “SOC 예산, 스톡 규모·국민 편의 등 고려한 심의 필요”

(인프라 구축 총량)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축과 관련, 국내 SOC 스톡이 부족하다는 입장과 민간소비 및 건설투자, 국민 안전과 편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심의해야 한다는 분석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일 발간한 ‘2018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인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예산 확대, 혁신성장 동력 창출, SOC 재원 감축, 재정혁신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 등에 대한 고려사항을 제시했다.

특히 전년 대비 20% 감축한 SOC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 가능성과 전년도 이·불용액, 연차별 소요, 완공기간 등을 고려해 국가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기한 것으로 평가했다.

도로·철도 국토계수당 연장

선진국 대비 낮고 혼잡비용 과다

민간소비·안전, 건설 투자 등서

악영향 미칠 가능성도 따져봐야

다면 정부는 국토면적당 도로와 철도 면적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국내 SOC 스톡이 상당 수준 축적됐다는 입장이나, 국내 SOC 스톡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상반된 입장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구와 국토면적을 모두 고려할 경우 도로와 철도의 국토계수당 연장은 선진국에 비해 낮고, 지역 간 철도가 선진국 대비 적정 스톡 규모(6000km)보다 부족하며 교통 혼잡비용 및 통근시간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다른 나라에 비해 크기 때문이다.

또 새 정부의 정책과제 재원 조달을 위해 SOC 예산을 감축한 이번 예산안 편성 방향이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등에 미치는 영향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 덧붙였다.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2020년 이후 SOC 예산이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SOC 예산은 2021년까지 지속 감소할 계획이라 SOC 예산의 중기 편성 방향에 대한 정부

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SOC 예산 감축과 2020년 이후의 주요 인프라 사업 본격 추진에 따라 안전과 관련된 SOC 투자 재원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국민의 안전과 편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예정처는 또 정부가 지출 증가 폭을 감안해 내년도 예산안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하나, 수입 부문의 증가 폭도 균형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내년도 예산안의 총수입 증가율이 7.9%로 본예산 대비 총지출 증가율(7.1%)을 상회하고, 올해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점을 감안하면 전년 대비 총지출 증가율(4.6%)에 그치기 때문이다.

또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19년부터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을 웃돌고, 지출 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여력이 제한된 의무지출은 내년에 최초로 총지출의 절반을 넘어 연평균 7.2%로 꾸준히 증가해 2021년 총지출 중 의무지출 비중이 51.9%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대중 자산이 없어 채무상환 시 조세 등의 재원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 비중이 내년 58.1%에서 2021년 61.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체희찬기자 cho@

## 아하! 그렇구나

### 지체상금의 감액

건설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의 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민법 제398조 제2항).

구 예산회계법령 및 계약사무처리규칙에서 공무원이 계약상 대자의 계약위반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어 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는 손해배상 약의 예정으로서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

지체상금을 계약총액에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경우 지체상금이 과다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지체상금률 자체가 과다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그 지체상금률 자체가 과다하지 않더라도 지체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체상금 총액이 증가하면 지체상금이 과다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다.

선박건조계약에서 지체상금을 지체 1일당 선박대금 액수의 1000분의 1.5의 비율로 정하였는데, 선박인도가 약정 인도일보다 400~500일 늦어져 인도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이 합계 14 억여원으로 계산되었는데, 법원이 그 지체상금을 3억9500만원으로 감액한 사례가 있고, 이때 법원은 감액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 예정액이란 예정한 손해배상액의 총액을 의미하므로, 지체상금의 과다 여부는 지체상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및 그에 대한 적당

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할 때 법원은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체상금률 자체가 과다하지 않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계산한 지체상금 총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이를 감액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54536 판결).

다만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의 지체상금 총액이 과다하다는 판단으로 지체상금을 감액한다면, 그 구체적인 감액방법은 단순히 총액을 감액하는 방법 대신 지연 손해금의 비율만을 조정함으로써 전체로서의 예정배상액을 적정 수준으로 감액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38637 판결).

지체상금이 과다한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인 바, 도급계약상의 조건이 도급인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정해져서 공사대금의 변동이 어렵게 되어 있고, 공사규모에 비하여 공사기간이 비교적 단기이며, 공사기간 당시 IMF 사태로 인하여 수입자재의 가격이 폭등하여 수급인이 어려움을 겪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약정 지체상금 4억1400만원을 1억 8000만원으로 감액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이응세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